

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. 11. 18 선고 2021가단81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 고 A단체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1. 18.

주 문

1. 피고들은 D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에게 공주시 E 답 1661.4㎡, 공주시 F 답 610.5㎡ 중 각 1/3 지분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06. 12. 27. 접수 제412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6. 12. 27.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호)

판사 유혜주

별지